

2026년 수원시 『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』 지원 계획 공고

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27일

수 원 시 장

1.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
- 시행기간 : 2026. 1. ~ 12. (예산 소진 시 종료)
- 보증한도 : 업체당 최대 5천만원
- 용자기간 : 1년 ~ 5년(1년 거치, 4년 분할 상환)
- 대출금리 : 특례보증 추천 금융기관 금리 ※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- 접수처 : 경기신용보증재단 ( 1577-5900)
- 보증대상 :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

※ ‘소상공인’ 이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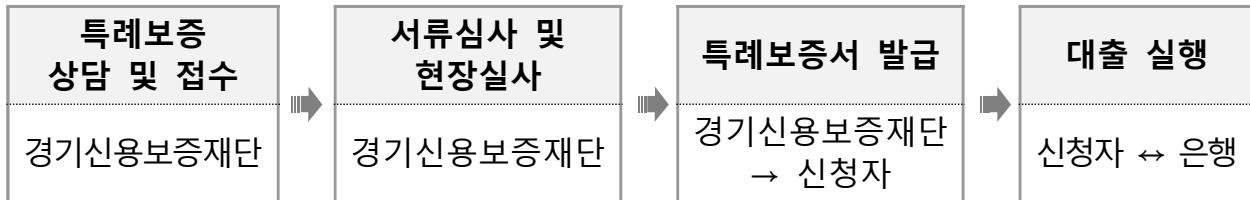
-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
 2.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

*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한업종 : 불임 참조

○ 구비서류

-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부가세과세표준증명, 납세증명서 등
- ※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○ 처리절차



○ 유의사항

-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의 이용자는 특례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.
- 개인 신용도 등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.
-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.
- 동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의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 또는 휴·폐업한 경우는 자금 지원을 중단함.
- 동 자금을 융자받은 개인이 포괄 양수·양도 계약서에 의한 법인전환을 진행하였을 시,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동자금의 지원을 중단하지 않음. (단, 타 시·도 이전 및 휴업의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중단함.)

2.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

- 시행기간 : 2026. 1. ~ 12. (예산 소진 시 종료)
- 지원내용 : 업체당 보증금액의 연 1%(초년도 1회) 지원
- 지원한도 :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
- 지원대상 : [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] 신청자
- 지원방법 : 특례보증서 발급 시 초년도 보증수수료 감면
- 지원기관 : 경기신용보증재단 ( 1577-5900)

[불임]

소상공인 특례보증 제한업종

구 분	업 종
330평방미터 초과 요식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(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관 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 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시장의 지정을 받은 “좋은식단”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 환경 시설자금 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여신
주류관련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유홍 주점업 무도유홍 주점업
담배관련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담배 중개업, 입담배 도매업, 담배 도매업
안마시술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금융관련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만 손해사정업, 보험대리 및 중개업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중 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
사채관련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부동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동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만, ‘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’ 및 ‘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’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(소비자)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,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(서비스)을 제공하는 경우’는 제외
경영컨설팅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획부동산업
골프장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골프장 운영업
무도장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무도장 운영업
카지노운영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카지노 운영업
사행성관련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타 사행시설관리 운영업(게임, 베팅 등)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·도매·소매·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
점술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불건전문화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인용품 판매 홍신소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같은 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하는 경우